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1 ~ 7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1. 11. 17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11. 09. 16.)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, 시험·연구시설 및 건조보관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50% 이내로 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,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발행위 허가시 신청지역에 도로와 상·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도로와 상·하수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지정·공고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21조제1호)

나.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%이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, 시험·연구시설,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50%이내로 완화함
(안 제53조)

다.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의 제한규정을 삭제함(안 별표 17)

○ 종교 집회장(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⇒ 종교집회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11.10.17. ~ 2011.11.07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”를 “군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하고, “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를 “군수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군계획위원회”를 “거창군 계획위원회(이하 “군계획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영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 전문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7호 중 “규칙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법 제44조제5항”을 “법 제44조의3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”로 한다.

제17조제1호중 “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”을 “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동법 제9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제14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호가목나목의 단서 중 “공작물(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)”을 “공작물”로 하며, 같은 조제3호 나목 중 “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”을 “지구단위계획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굴착”을 “형질변경(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전문 중 “영 제54조제2항”을 “법 제5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영 별표1”를 “영 별표 1의2”로 한다.

제21조 전문 중 “영 별표1”을 “영 별표 1의2”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도로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

1.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·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, 이 경우 도로는 「건축법」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,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45조에 따라 도로를 지정·공고할 수 있다.

제22조·제23조·제24조·제25조 전문 중 “영 별표1”을 “영 별표 1의2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규칙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4항제1호 중 “「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”를 “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

보호법」 제13조”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중 “전기설비기준 제91조”를 “「전기설비 기술기준」 제37조”로 한다.

제48조제15호 본문 중 “공공용시설”을 “교정 및 군사시설”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

제49조제6호 중 “교육연구 및 복지시설”을 “교육연구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제16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

제53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농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50% 이내로 한다.

1.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(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한정한다)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·연구시설
2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산물 건조·보관시설

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농지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% 이내로 하고, 공원의 건폐율은 20% 이내로 한다.

제54조제4호 중 “제2조제5호다목”을 “제2조제8호라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5호 중 “제2조제5호가목”을 “제2조제8호가목”으로, “지방산업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”로 한다.

제56조 중 “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”을 “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57조 중 “「농지법」 제34조”를 “「농지법」 제32조”로 한다.

제59조제2호 중 “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”을 “자연공원”으로, “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”를 “공원마을지구”로 하고, 같은 조제3호 중 “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(공업지역이 아닌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)”를 “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(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)”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“정비구역, 재개발구역”을 “정비구역”으로 한다.

제62조 본문 중 “거창군계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거창군 계획위원회 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3조제2항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”를 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”을 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, 군 계획·건축·도로·하천업무를 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1항제1호 중 “영 제55조제5항,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”를 “제20조제1항제2호 단서”로 한다.

제74조를 삭제한다.

별표14, 별표 17, 별표 18,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,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-----</p>
<p>제2조(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) <u>거창군</u>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) <u>군</u>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3조</u>-----</p>
<p>제3조(군기본계획의 위상)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건설교통부장관</u>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<u>거창군수</u>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.</p>	<p>제3조(군기본계획의 위상) ----- ----- <u>국토해양부장관</u>----- ----- <u>군수</u>-----</p>
<p>제4조(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<u>군계획위원회</u>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.</p>	<p>제4조(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거창군 계획위원회</u>(이하 “<u>군 계획위원회</u>”라 한다)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·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케이블텔레비전, 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 ----- -----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)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, <u>건설교통부장관</u>과의 협의, <u>군계획위원회의 심의</u> 및 건축위원회와 <u>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</u>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규칙</u>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</p>	<p>제9조(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토해양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조(공동구의 점용료·사용료) <u>법 제44조제5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11조(공동구의 점용료·사용료) <u>법 제44조의3제3항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2조(공동구의 관리비용 등)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·관리방법,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의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)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- ----- -----</p>
<p>제17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건축물의 건축 : 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</p> <p>2. 공작물의 설치</p> <p>가.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,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,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(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)의 설치를 제외한다.</p> <p>나. 도시지역·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,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,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(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)의 설치를 제외한다.</p>	<p>제17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- ----- 같은 법 제14조제1항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 공작물 -----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공작물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다. (생략)</p> <p>3. 토지의 형질변경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도시지역·자연환경보전지역·<u>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</u>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·성토·정지·포장 등(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다.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<u>굴착</u></p> <p>라. (생략)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제18조(조건부 허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영 제54조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20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<u>영 별표 1</u>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<u>지구단위계획구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다.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형질변경(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)</u>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조건부 허가) ----- <u>법 제57조제4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<u>영 별표 1의2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토지분할 제한면적) 군수는 영 별 표 1 제2호라목(1)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·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「거창군 건축조례」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24조(토지분할 제한면적) ----- 영 별 표 1의2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5조(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) 영 별 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</p>	<p>제25조(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) 영 별 표 1의2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) ① 영 제 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, 위해의 방지, 환경오염의 방지,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30조(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) ① -----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5조(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「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. 전기설비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</p>	<p>제45조(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 ----- ----- ----- 2. 「전기설비기술기준」 제37조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8조(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<u>공공용시설</u>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교도소</p> <p>나. <u>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</u></p> <p>16. (생략)</p>	<p>제48조(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-----</p> <p><u>교정 및 군사시설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나. <u>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</u></p> <p>1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9조(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<u>교육연구 및 복지시설</u>(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)</p> <p>7. ~ 15. (생략)</p> 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<u>교정 및 군사 시설</u>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교도소</p> <p>나. <u>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</u></p> <p>17. (생략)</p>	<p>제49조(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<u>교육연구시설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7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나. <u>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</u></p> <p>1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)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·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	<p>제56조(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) ----- ----- -----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</p>
<p>제57조(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)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「농지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	<p>제57조(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) ----- ----- ----- 「농지법」 제32조----- -----</p>
<p>제59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용적률)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·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: 100퍼센트 이하 2.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: 80퍼센트 이하. 다만,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.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(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) : 150퍼센트 이하 	<p>제59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용적률)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-- 자연공원 ----- 공원마을지구----- 3. -----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(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) :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p>제66조(분과위원회)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1. 제1분과위원회 : 법 제59조, 영 제55조 제5항,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66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4조(과태료의 징수)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「거창군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[별표 14]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1조제14호 관련)

※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과 기존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·개축에 한한다.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·사목·아목·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(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(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같은 호 다목, 라목을 제외한다)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
[별표 17]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1조제17호 관련)

※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·고등학교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(농임·축수산업용에 한한다)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
[별표 18]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1조제18호 관련)

※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다세대주택에 한한다)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, 바목, 사목, 아목, 차목에 해당하는 것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용에 한한다)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중 중·고등학교 및 교육원(농·임·축·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것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제17호의 공장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)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·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, 액화가스판매소, 액화가스취급소, 도료류 판매소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, 나목에 해당하는 것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(고물상을 제외한다)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

[별표 20]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1조제20호 관련)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, 사목, 차목에 해당하는 것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중 종교집회장에 한한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, 나목에 해당하는 것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